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6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3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('13. 12. 12)에 맞추어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(안 별표 1)

- 기능직을 일반직(관리운영직군, 기술직군)으로 전환

나.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(안 별표 2)

- 별정직(농기계교관)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일반직에 포함
- 계약직(비서)을 별정직(7급상당)으로 전환

다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변경(안 별표 3)

| 구분 | 계 | 일반직 | 연구·지도직 | 기능직 | 별정직 | 정무직 |
|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현행 | 591 | 491 | 21 | 77 | 1 | 1 |
| 조정 | 591 | 568 | 21 | 0 | 1 | 1 |
| 증감 | 0 | 77 | 0 | △77 | 0 | 0 |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별첨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 예고 : 생략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정원은”을 “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”으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| 일 반 직 | 별정직 · 정무직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비 율 | 99% 이상 | 1% 이내 |

- 비 고 :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· 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읍 · 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| 구 분 | 4급이상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전문 경력관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비 율 | 1%이내 | 5%이내 | 23%이내 | 29%이내 | 26%이내 | 15%이상 | 1%이내 |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| 구 분 | 연구직 | | 지도직 |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연구관 | 연구사 | 지도관 | 지도사 |
| 비 율 | - | 100% | 6% 이내 | 94% 이상 |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공무원

| 구 분 | 5급상당 이상 | 6급상당 | 7급상당 | 8급상당 | 9급상당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비 율 | | | 100% | | |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| 기관별 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회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·면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| 591 | 591 | | | | |
| 정무직 계 | 1 | 1 | | | | |
| 군 수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계 | 568 | 568 | | | | |
| 4급 | 2 | 1 | | 1 | | |
| 4~5급 | 2 | 2 | | | | |
| 5급 | 25 | 10 | 2 | 4 | 1 | 8 |
| 6급 이하 | 538 | 538 | | | | |
| 전문경력관 소계 | 1 | 1 | | | | |
| 연구직 계 | 2 | 2 | | | | |
| 연구관 | | | | | | |
| 연구사 | 2 | 2 | | | | |
| 지도직 계 | 19 | 19 | | | | |
| 지도관 | 1 | | | 1 | | |
| 지도사 | 18 | 18 | | | | |
| 별정직 계 | 1 | 1 | | | | |
| 7급상당 이하 | 1 | 1 | | | |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 관별 ·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<u>정원은</u> 규칙으 로 정한다.</p> | <p>제4조(직급별 정원) ----- ----- --. ----- -----<u>정원(지방전문경력관</u> <u>의 직무군 포함)</u>은----- -----.</p>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직종만 개편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210 |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